「등불쌤 학원」 해사법규 개정·정오표

03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

정오표

수정사항

[p.80 – #03, p.146 – #53] ③ 지문 – 개정으로 인한 수정

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[2025.1.3.]에 따라, 민간해양구조대원 → 해양재난구조대원 관련 사항 개정

수정 전 [p.80 – #03, p.146 – #53]

03. 다음 중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5년 경위공채 기출(해경학개론)

① '수난구호'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.

② '구난'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.

③ '민간해양구조대원'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④ '구조'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수정 후 [p.80 – #03, p.146 – #53]

03. 다음 중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5년 경위공채 기출(해경학개론) [법령개정]

① '수난구호'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.

② '구난'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.

③ '해양재난구조대원'이란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.

④ '구조'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수정사항

[p.88] 개정으로 인한 수정

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[2025.1.3.]에 따라, 민간해양구조대원 → 해양재난구조대원 관련 사항 개정

수정 전 [p.88]

▌시행령 제7조(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)

① (생략)

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**광역구조본부의 장**이 되고,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2. 대한적십자사,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,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,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, 민간해양구조대원,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3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**지역구조본부의 장**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2. 대한적십자사,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,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,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, 민간해양구조대원,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3. 제6조제3항제2호나목(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)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
수정 후 [p.88]

▌시행령 제7조(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)

① (생략)

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**광역구조본부의 장**이 되고,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2. 대한적십자사,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,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,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, 해양재난구조대원,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3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**지역구조본부의 장**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2. 대한적십자사,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,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,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, 해양재난구조대원,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3. 제6조제3항제2호나목(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)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
수정사항

[p.99] ① 지문 – 개정으로 인한 수정

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[2025.1.3.]에 따라, 민간해양구조대원 → 해양재난구조대원 관련 사항 개정

수정 전 [p.99]

31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?

▌등불 16기 중간

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,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관,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·운영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자연적·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·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정답 ▌③

해설 ▌

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: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,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이하 "해양경찰관"이라 한다),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·운영

② 해양경찰청장은 **해수면**에서 자연적·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**구조본부의 장**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(소방관서의 장×)

수정 후 [p.]

31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?

▌등불 16기 중간 [법령개정]

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,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관,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·운영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자연적·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·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정답 ▌③

해설 ▌

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: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,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이하 "해양경찰관"이라 한다),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·운영

② 해양경찰청장은 **해수면**에서 자연적·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**구조본부의 장**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(소방관서의 장×)

수정사항

[p.142] ④ 지문 – 개정으로 인한 수정

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[2025.1.3.]에 따라, 민간해양구조대원 → 해양재난구조대원 관련 사항 개정

수정 전 [p.142]

35. 다음 중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1년 간부 기출

① "수난구호"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·구조·구난과 구조된 사람·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·관리·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
② "수난구호협력기관"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③ "구조"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④ "민간해양구조대원"이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·지도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정답 ▌④

해설 ▌

④ 연안사고예방법상 "연안안전지킴이"에 관한 설명이다.

▌**민간해양구조대원**

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▌**해양재난구조대원** [25.01.03.시행]

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촉된 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.

✱ **개정예정** ▌민간해양구조대원 → 해양재난구조대원 [25.01.03.시행]

수정 후 [p.142]

35. 다음 중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1년 간부 기출 [법령개정]

① "수난구호"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·구조·구난과 구조된 사람·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·관리·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
② "수난구호협력기관"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③ "구조"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④ "해양재난구조대원"이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·지도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정답 ▌④

해설 ▌

④ 연안사고예방법상 "연안안전지킴이"에 관한 설명이다.

▌**민간해양구조대원**

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▌**해양재난구조대원** [25.01.03.시행]

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촉된 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.

✱ **개정예정** ▌민간해양구조대원 → 해양재난구조대원 [25.01.03.시행]